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령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)”을 “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자치부 고시)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)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생성”을 “생성, 연계, 연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의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”을 “행정자치부의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 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각각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,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안전부 고시)에 따라 성동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,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개인정보 처리”란 개인정보를 수집, <u>생성</u>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~ 15. (생략)</p> <p>제5조(다른 지침과의 관계)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행정자치부 고시)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행정자치부 고시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생성, 연계, 연동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다른 지침과의 관계) ① -- ----- -----</p>

은 행정안전부의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및 서울특별시의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

가입 방법 제공)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(이하 “대체수단”이라 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,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 가입절차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0조(개인정보 유출신고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 대

-- 행정자치부의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30조(개인정보 유출신고) ① -----

② 구 본청의 개인정보 파일은 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등록하고, 구 소속기관(직속기관을 말함)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은 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57조(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)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·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0조(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) ① (생략)

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, 지체 없이 등록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--- 행정자치부-----
-----.

제57조(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) ① -----

----- 행정자치부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행정자치부-----.